

의안번호	2207404
의 퇴 인	윤건영의원
회 답 일	2025.2.27.
추계번호	25D0567

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제정안에 따른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,200만원씩 총 6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공무원보수위원회의 구성(안 제5조)	12	12	12	12	12	60	1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 (위원회의 구성)	위원회는 공무원위원 9명, 정부위원 9명,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함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10조제1항 (사무국의 설치)	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둠(제1항)	의무규정
	안 제10조제2항 (공무원보수연구회의 설치)	사무국에 공무원보수 실태 및 체제 개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·연구하기 위하여 공무원보수연구회를 두며, 연구회는 매년 공무원 보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(위원회의 구성)	○	—
2	안 제10조제1항(사무국의 설치)	×	인사혁신처의 소관부서가 지원 가능
	안 제10조제2항(공무원보수연구회의 설치)	×	연구회의 사무로 실태조사만 규정 실태조사는 현행 예산범위에서 수행 가능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에 따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총 27명¹⁾으로 구성되는데, 본 추계에서는 공무원위원과 공익위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한다고 가정함
 - 현재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보수위원회규정(인사혁신처훈령)에 따라 구성·운영 중인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예를 참고하여, 제정안에 따른 공무원위원(노조대표)과 공익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
 - 다만,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위원 15명 중, 현재 전체회의 참석위원 10명(노조대표 5명과 전문가 5명), 소위원회 참석위원 5명(노조대표 2명과 전문가 3명)은 인사혁신처훈령²⁾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있음³⁾
 - 따라서 제정안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의 산출 시 수당 지급 대상 인원에서 제외함
- 본 추계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가 각각 3회 개최되고, 회의참석수당으로 회의참석과 안전검토를 포함하여 35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함
 -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의 회의일수는 각각 연평균 3회임
 - 현재 인사혁신처는 회의참석수당으로 회의 1회당 3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
- 본 추계에서 제정안에 따른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이 현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, 사무국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인사혁신처의 소관부서가 그 사무처리를 지원한다고 가정함

[표 2] 제정안과 훈령에 따른 ‘공무원보수위원회’의 심의·의결사항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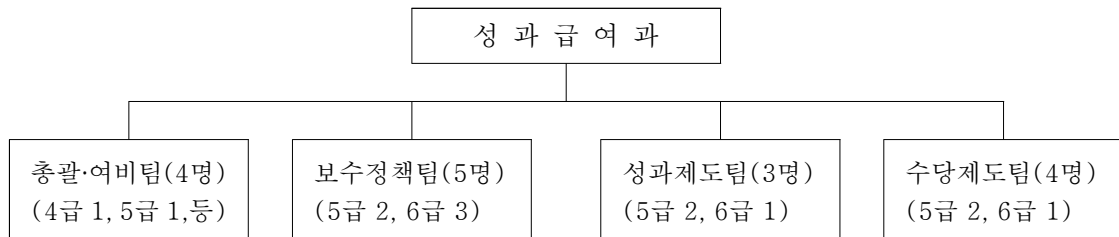
	제정안	훈령
심의·의결 사항	1. 공무원의 봉급의 수준 및 다음 연도에 적용할 봉급의 인상률	1. 공무원 보수수준의 조정에 관한 사항

- 1) 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 27명으로 구성한다.
1. 공무원을 대표하는 위원(이하 “공무원위원”이라 한다) 9명
 2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위원(이하 “정부위원”이라 한다) 9명
 3.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(이하 “공익위원”이라 한다) 9명
- 2) 제10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,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- 3) 전체회의는 총 15명(보수정책 관련 공무원 5명, 노조대표 5명, 전문가 5명), 소위원회는 총 7명(보수정책 관련 공무원 2명, 노조대표 2명, 전문가 3명)으로 각각 구성됨

	2. 공무원 보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	
	3. 공무원의 호봉, 승급, 보수의 지급방법, 보수의 계산,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	
	4.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	2.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	5. 공무원과 민간부문 근로자 간 또는 공무원의 종류·직군 등 간의 보수균형에 관한 사항	3. 공무원의 종류·직군 등 간의 보수균형에 관한 사항
	6. 그 밖에 공무원 보수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	4. 기타 공무원 보수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[표 3]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 사무지원 조직



□ 또한, 제정안은 사무국에 공무원보수연구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, 현시점에서 공무원보수연구회의 구성과 소관업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므로,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

- 제정안은 공무원보수연구회의 업무로, ‘공무원 보수 실태조사’만 규정하고 그 외의 사무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, 현시점에서 공무원보수연구회의 구성과 업무 범위를 예측하기 곤란함
- ‘공무원 보수 실태조사’는 현행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
[표 4] ‘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’ 예산내역

- 소관부처: 인사혁신처
- 법적근거: 국가공무원법 제46조(보수결정의 원칙), 공무원보수규정 제3조(보수자료조사)⁴⁾
- 사업명: 공무원후생복지(2044-303)의 내역사업 ‘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’
- 예산액: 4,100천원(2025년 기준)

- 4) 제3조(보수자료 조사) ① 인사혁신처장은 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민간의 임금,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 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.
-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그 기관의 감독을 받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임금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세무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재외공관의 장은 그 재외공관 소재지의 물가지수, 외환시세의 변동상황 등 재외공무원의 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

- 제정안은 부칙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,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민간위원의 회의참석수당(안 제5조제1항)

- 회의참석수당은 위원회의 민간위원 인원에 위원회의 회의일수와 참석수당 단가를 각각 곱하여 추계함
- 제정안에 따른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경우, 전체회의는 27명으로 구성하고, 소위원회는 13명(정부위원 4명, 공무원위원 4명, 공익위원 5명)⁵⁾으로 구성한다고 가정하면, 회의참석수당의 지급 대상으로 추가되는 인원은 전체회의의 8명, 소위원회 10명임
 - 전체회의(8명)⁶⁾: 공무원위원(노조대표) 4명, 공익위원 4명 등 8명임
 - 소위원회(4명)⁷⁾: 공무원위원(노조대표) 2명, 공익위원 2명 등 4명임
- 인사혁신처가 훈령에 따라 구성·운영 중인 ‘공무원보수위원회’의 연평균 회의일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각각 3일임

[표 5]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연도별 회의일수: 2020~2024년

(단위: 일수)							
	2020	2021	2022	2023	2024	합계	연평균
전체회의	3	2	2	4	3	14	3
소위원회	2	2	2	3	6	15	3

자료: 인사혁신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제정안에 따라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는 경우, 공무원위원(노조대표)과 공익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

외교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
- 5) 현재 구성·운영 중인 소위원회(공무원보수위원회)의 구성을 참고하였음
- 6) 전체회의의 참석대상인 공무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에서 현재 인사혁신처훈령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위원 5명과 전문가 5명을 각각 제외하였음
- 7) 소위원회 참석대상인 공무원위원 4명과 공익위원 5명에서 현재 인사혁신처훈령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위원 2명과 전문가 3명을 각각 제외하였음

[표 6] 공무원보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	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전체회의	지급인원(A)	8	8	8	8	8	—
	지급단가(B, 천원)	350	350	350	350	350	—
	회의일수(C)	3	3	3	3	3	—
	소 계 (D=A×B×C백만원)	8	8	8	8	8	40
소위원회	지급인원(E)	4	4	4	4	4	—
	지급단가(F,천원)	350	350	350	350	350	—
	회의일수(G)	3	3	3	3	3	—
	소 계 (H=E×F×G백만원)	4	4	4	4	4	20
합 계(I=D+H, 백만원)		12	12	12	12	12	60

나. 추계결과

- 제정안에 따른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,200만원씩 총 6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7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공무원보수위원회의 구성(안 제5조)	12	12	12	12	12	60	1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장삼열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삼열	02-6788-4831	jsy@assembly.go.kr